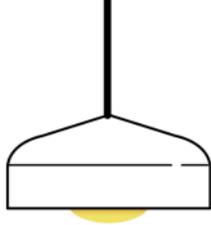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21-10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대표 복지서비스 50



보건복지부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 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있습니다. ”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4
02	긴급복지 지원제도	06
03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08
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09
05	행복주택 공급	11
06	통합문화이용권	14
07	평생교육바우처	16
08	실업급여	17
09	국민취업지원제도	18
1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19
11	근로장려금	20
12	희망저축계좌(Ⅰ, Ⅱ)	21
1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22
14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24
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6
16	육아휴직 급여 지원	27
17	영아수당	28
18	가정양육수당 지원	29
19	만 0~2세 보육료 지원	30
20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31
21	아동수당	33
22	아이돌봄서비스	34
2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7
24	다함께 돌봄 사업	39

25	국가장학금[I , I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41
2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42
27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44
28	건강보험제도	46
29	재난적의료비 지원	47
30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49
31	의료급여 제도	50
32	국가건강검진제도	52
33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54
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55
3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6
36	기초연금제도	57
37	주택연금제도	58
38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59
3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60
40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61
41	치매검진 지원	62
42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63
43	장애인연금	64
44	장애인 일자리 지원	66
4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67
46	장애인 활동지원	69
47	법률구조 제도	70
48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72
4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73
5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74

01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
- * '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2. 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원을 뺀 93만 6,330원 지급(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만 1,000원	-	-
중학생	46만 6,000원	-	-
고등학생	55만 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콜센터(☎02-6222-6060)

02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만 8,609원, 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 지 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가 지 원	교육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전기 요금	단전 시 연계된 전기로 지원	50만 원 이내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2022.1.13. 이후부터 적용)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 연료비지원 상승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03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

-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5,000만원(신혼부부 2억 7,000만 원, 2자녀 가구 3억 1,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까지 소득별로 연 2.00~2.7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0%~2.45%) 저금리로 대출('22.1월 기준)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3.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04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 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1.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2.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I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II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다자녀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갱신계약 횟수 제한 없음

3.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05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행복주택 공급

- 1.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p>(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p> <p>(자산) 본인 총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p>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p>(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p> <p>(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p>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p>(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120%) 이하</p> <p>(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p>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p>(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p> <p>(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p>
주거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p>(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p> <p>(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p>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산단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창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적용 시 1인가구는 20%, 2인가구는 10%를 기존 비율에서 각각 추가로 더하여 적용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1.2.2.시행)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3인 기준) 641만 8,566원, 120%(3인 기준) 770만 2,279원

※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장기근속자(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 일자리연계형(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중기전용)은 해당 유형별 입주 대상자(창업인 등) 10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3.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청약하기
- 4. 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자주 하는 질문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06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통합문화이용권

1. 대상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0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3.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3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4.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에도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22.1.10.~1.14. 기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재충전 기간 : 2022.1.17.(월)~1.21(금), 자동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안내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도 있으니 2022.2.3. 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하신 후, 수급자격이 있는데 자동재충전이 안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발급, 충전 신청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발급기간 이내인 경우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제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1월 말경 휴대폰으로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2.2.3.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어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12.31)까지는 지원금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명의자 사망 시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이외에 본인충전금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가능합니다.(1회 100원 이상, 10만 원 한도,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재분리 되지 않습니다.
- 주요 가맹점 할인혜택 제공은 카드당 할인매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 내(최대 5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자동 재충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합산카드(합산 대상이 된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07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평생교육바우처

1.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내용 지원인원 30,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의 경우 연간 70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바우처 소진율 및 이수현황에 따라 우수이용자를 선정하여 35만 원 재충전
※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불가

사용가능 교육	대학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시설 및 학원,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 운영되는 인문교양교육, 자격증 취득 및 학점은행제 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가능
사용가능 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www.lllcard.kr 를 통해 사용기관 확인 가능)

3.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신청·접수 → 바우처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수령 → 교육기관 수강 신청 및 과정 수강

4.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성인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카드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습자는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08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 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09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필요요건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	4억 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	-
II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	-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2.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I 유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II 유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비용 15~195만 4천원*(6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지원수당(월 28만 4천원×6개월) 등 최대 195만 4천원 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저소득층, 특정계층)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참여 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0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1. 대상** 일부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등

- 2. 내용** 실업자·재직자 등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의 직업능력훈련비 등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II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월 출석률이 80%이상이면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3.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4. 문의**
-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11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근로장려금

-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1.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1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021년 기준)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금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 3. 방법**
- ① (원칙)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지급
 -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지급
 -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인터넷홈택스)
- 신청도움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4.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12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희망저축계좌(Ⅰ, Ⅱ)

1. 대상

구분	가입기준
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Ⅰ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3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 1.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2. 내용**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3.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분만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2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22년 1월 현재 30곳

14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1.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3.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기간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꾸어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

15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1.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2.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 3.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 4. 문의**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안내

-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2-2276-2276(국립중앙의료원)
-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2-460-3269(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경북대학교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현대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31-255-3375(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안동의료원)

16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육아휴직 급여 지원

- 1.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원 예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3.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 4.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17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영아수당

- 1.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2. 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이용권(바우처)

- 3.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영아수당은 어떻게 지원 되나요?

영아수당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영아수당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므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생아의 영아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영아수당(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18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6세(86개월 미만) 영유아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내용**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86개월 미만)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만 7,000원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만 9,000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		

-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영아수당 대상자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하며 영아수당(현금)을 지원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19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0~2세 보육료 지원

-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6만 4,000원~49만 9,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5세 :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만 4세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만 3세 : 2018년 1월 1일~2019년 2월 28일
- ※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10만 원	28만 원	28만 원
보육료(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5만 원	7만 원	7만 8,000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2년 기준)

- 3.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21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수당

- 1.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2.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아동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 됩니다.

22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 1.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2.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시간제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내, 서비스 종류별 상이)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 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36개월	(기본) 1회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기본) 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기본) 1회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학교, 보육시설 및 등하원(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돌봄서비스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활동 추가 지원 (아동 관련 세탁,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 시설이용 아동 :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660원)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85%)	1,582원 (15%)	10,761원 (85%)	1,899원 (15%)	9,495원 (75%)	3,165원 (25%)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7,596원 (60%)	5,064원 (40%)	6,330원 (50%)	6,330원 (50%)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라형	150% 초과	-	10,550원 (10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A형 (2015.1.1. 이후 출생)		B형 (2014.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95원 (90%)	1,055원 (10%)	8,440원 (80%)	2,110원 (20%)	9,495원	4,225원	8,440원	5,280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60%)	4,220원 (40%)	2,110원 (20%)	8,440원 (80%)	6,330원	7,390원	2,110원	11,610원
다형	150% 이하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5%)	8,967원 (85%)	1,583원	12,137원	1,583원	12,137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3,720원	-	13,720원

- 3. 신청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 (☎1577-2514)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아시나요?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시간제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3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9.1.1. 이후 출생자)
- ※ BCG(피내용), Hib, PCV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 ※ A형간염 백신은 2012.1.1.이후 출생자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
 - ※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6개월~만 12세 어린이

- 2. 내용**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예방접종(총 17종) 전액 지원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결핵	BCG(피내용)	1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HepB	3	1차(출생 시), 2차(생후 1개월), 3차(생후 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5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5~18개월), 5차(만 4~6세)
	Tdap/Td	1	6차(만 11~12세)
폴리오	IP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18개월), 4차(만 4~6세)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폐렴구균	PCV	4	1차(생후 2개월), 2차(생후 4개월), 3차(생후 6개월), 4차(생후 12~15개월)
	PPSV	-	침습 폐렴구균 질환의 위험이 높은 만 2세 이상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2	1차(생후 12~15개월), 2차(만 4~6세)
수두	VAR	1	1회(생후 12~15개월)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횟수	접종 권장시기
A형간염	HepA	2	1~2차(생후 12~23개월)
일본뇌염	LJEV(불활성화 백신)	5	1~2차(생후 12~23개월), 3차(생후 24~35개월), 4차(만 6세), 5차(만 12세)
	LJEV(약독화 생백신)	2	1차(생후 12~23개월), 2차(생후 24~35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1~2차(만 12세)
인플루엔자	IIV	1**	매년 1회(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 DTaP, IPV, Hib 백신은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DTaP-IPV 혼합백신 또는 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가능

** 생후 6개월 ~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경우 최소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사업대상 등의 자세한 내용은 HPV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본 책자 138p) 소개 참조

3. 방법

- 지정 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 방문
-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24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다함께 돌봄 사업

- 1. 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2. 내용**
-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필수 운영시간 포함)
 - 학기중 : 14:00~19: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09:00~18:00(필수 운영시간)
 - 시간운영 연장 시범사업 : 오전(07:00~09:00), 야간(19:00~21:00) 일일 4시간 연장 운영
- ※ 전국 30개소 지정 운영(다함께돌봄 누리집(www.dadol.or.kr)에서 확인 가능)
 ※ 프로그램 제공 예시(센터 여건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상이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아침돌봄	07:00~09:00	아침돌봄(시간연장 시범사업 등)
	09:00~10:00	출석확인, 자유놀이
방학중	10:00~11:00	독서지도, 숙제·학습지풀기
	11:00~12:00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EBS)
	12:00~13:00	점심시간 및 휴식
	13:00~14:00	자유놀이(야외 및 실내놀이)
	학기중	14:00~14:50
14:50~15:30		간식시간 및 휴식
15:30~16:00		프로그램
16:00~17:00		프로그램
17:00~19:00		자유놀이, 귀가지도, 저녁식사
저녁돌봄	19:00~21:00	저녁식사, 저녁돌봄(시간연장 시범사업 등)

※ 서비스 이용료(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0만 원 이내 본인부담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가능

3. 방법

-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등으로 서비스 신청
- 돌봄서비스 신청(보호자) → 상담, 개인별 플랜(센터) →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 통보(센터) → 서비스 제공(센터) → 사후관리 및 확인(해당 지자체)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5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I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II유형에 참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교 자체 기준으로 선발)
다자녀장학금 (세자녀 이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 I 유형 및 다자녀장학금은 성적(B⁺)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C⁺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도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없음

2. 내용

- I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I 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 자 녀	첫째, 둘째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전액							

- II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www.kosaf.go.kr

26

교육비가 부담될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1. 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의 학부생,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일반대학원생으로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구분	학부	대학원
대상	협약 체결대학 학부생	협약 체결대학 일반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 이수 중인 학생
연령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만 40세 이하
성적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제한없음
소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소득 무관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대출금리	1.7%(변동금리)
대출조건	등록금 대출(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기당 150만 원) ※ 대학원 등록금 대출은 석사과정 6,000만 원, 박사과정(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9,000만 원 총 한도 내
이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상환방법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 원) 이하인 경우 원리금 상환유예,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의무상환

3.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2년부터 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재학 중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됩니다.
 - 2022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범위에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 ※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 1. 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 2. 내용**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교육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재발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아동 보호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상담,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일상생활지원, 학업지도 및 문화 체험 지원
- 3. 신고방법 및 문의**
 - 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112”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73개소*)에 문의·상담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참조

자주 하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업무상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 * 교사 직군(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의식주 소홀, 학교나 병원에 보내지 않음, 비위생적인 환경 등

신고 시 어떤 사항을 말하면 좋을까요?

학대피해 의심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말씀해주시고, 학대 의심상황과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8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신부 20만 원 추가 지급)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알려드립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①질환기준, ②소득기준, ③재산기준, ④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①질환기준, ④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기준	조건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진료 : 모든 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진료 :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본인부담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심장·뇌혈관질환 및 중증외상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8만 2,740원, 지역가입자 19만 85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의료비 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상기 기준은 진료개시일이 2021.1.1.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분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지원 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개별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개별 심사	<p>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p> <p>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p> <p>②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p> <p>③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p> <p>④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p> <p>⑤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p>	

3.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31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구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2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만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 																											
영유아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3회) 검진 실시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1차) 생후 14~35일</th> <th>(2차) 4~6 개월</th> <th>(3차) 9~12 개월</th> <th>(4차) 18~24 개월</th> <th>(5차) 30~36 개월</th> <th>(6차) 42~48 개월</th> <th>(7차) 54~60 개월</th> <th>(8차) 66~71 개월</th> </tr> </thead> <tbody> <tr> <td>건강검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강검진</td> <td>-</td> <td>-</td> <td>-</td> <td>○ (18~29)</td> <td>-</td> <td>○ (42~53)</td> <td>○ (54~65)</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	구강검진	-	-	-	○ (18~29)	-	○ (42~53)	○ (54~65)	-
구분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건강검진	○	○	○	○	○	○	○	○																				
구강검진	-	-	-	○ (18~29)	-	○ (42~53)	○ (54~65)	-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2. 내용

구분	목적 질환																					
일반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성·연령별 검사항목</th> <th>실시시기</th> </tr> </thead> <tbody> <tr> <td>총콜레스테롤</td> <td rowspan="4">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td> </tr> <tr> <td>HDL콜레스테롤</td> </tr> <tr> <td>트리글리세라이드</td> </tr> <tr> <td>LDL 콜레스테롤</td> </tr> <tr> <td>B형간염</td> <td>40세</td> </tr> <tr> <td>골밀도검사</td> <td>54, 66세(여성)</td> </tr> <tr> <td>인지기능장애</td> <td>66세 이상 2년 1회</td> </tr> <tr> <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 <td>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td> </tr> <tr> <td>생활습관평가</td> <td>40, 50, 60, 70세</td> </tr> <tr> <td>노인신체기능</td> <td>66, 70, 80세</td> </tr> <tr> <td>치면세균막검사</td> <td>40세</td> </tr> </tbody> </table>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40세	골밀도검사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성·연령별 검사항목	실시시기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40세																				
	골밀도검사	54, 66세(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암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암 :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각 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 1. 대상** 지역 주민
-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 4. 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35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지급

-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월 최대 30만 7,500원	월 최대 49만 2,000원 (1인당 최대 24만 6,000원)

-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만 65세 미만인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지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7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주택연금제도

-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 6,000원의 연금수령(중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2년 2월 1일 기준)
 -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산절차를 통해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38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백신(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

-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모바일 앱
-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
-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42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내용 36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

구분	지원내용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코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심장 장애인	육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상용 육창예방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등 3개 품목),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칼, 포크, 젓가락, 빨대 등 5개 품목),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대화용장치
뇌병변 장애인	대체입력장치(스위치)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교부 결정

4.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 관할 지자체

알려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만나보세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www.knat.go.kr)에 접속하면 보조기기 지원 사업,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 보조기기 안전 모니터링, 보조기기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연금

1.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2022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만 18세 ~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38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8만 원	38만 7,500원 ▪ 부가급여 38만 7,5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7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7만 원	7만 원 ▪ 부가급여 7만 원
차상위 초과	최고 32만 7,500원 ▪ 기초급여 30만 7,500원 ▪ 부가급여 2만 원	4만 원 ▪ 부가급여 4만 원

* 차상위계층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56만 540원) 이하

** 만 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 필요)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자주 하는 질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재심사 면제대상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17.4.1. 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대 10만 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44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일자리 지원

1. 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미취업 등록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191만 4,440원
	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95만 7,220원
복지 일자리			사무보조,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주 14시간 월 56시간	51만 2,960원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	일 5시간 주 25시간	119만 9,960원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	일 5시간 주 25시간	119만 9,960원

3. 방법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 모집

4.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45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9세 장애인
II 유형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8~69세 장애인

※ 단, 69세를 초과할 경우 상담과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를 판단

2. 내용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전문상담(최소 2회 이상 실시)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참여수당 기본 15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 추가 지급
(2단계)	직업능력 향상	
12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고용 등) 연계 	훈련수당 월 최대 28만 4,000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3개월 ~ 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직무분석 및 적합일자리 동행 면접 2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 	취업 후 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3.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www.kead.or.kr

자주 하는 질문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한 후에 2단계 민간훈련기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공단지사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취업계획 수립(1단계),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각 단계마다 참여(훈련)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6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 1. 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 2.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88만 9,000원 ~ 최대 710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18만 5,000원), 자립준비(29만 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29만 7,000원)
 -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 4.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기준이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7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법률구조 제도

- 1. 대상**
- 중위소득 125%(4인 기준 640만 1,400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68만 1,620원) 이하 농·어업인·농·어업인

- 2. 내용**
-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심판 등의 소송대리, 소송서류 무료작성(단, 1,000만 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변호 지원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국민	유료	유료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무료	유료
	전시납부자가족	무료	무료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외국인여성포함)		
	미혼부		
	소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재산)		
	소액임차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피해자		
	경찰·소방공무원		
예술인			
소규모 중소기업인			
의료사고피해자			
국내거주 외국인			

중위소득 기준	대상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125% 이하	범죄피해자(신체)	무료	무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재해근로자 등(경남 소재 사업장)		
	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한부모가족(취약계층)		
	가족관계미등록자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양육, 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		
개인회생/파산·면책신청대상자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			
150%이하	농업인·어업인		
소득기준 예외	차상위계층		
	임금피해근로자(국내거주외국인포함)		
	임금피해선원(국내거주외국인포함)		
	법원소송구조사건 피구조자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불법사금융피해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4.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알려드립니다

공단에서 도와드리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사건(예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과 가사사건(예 : 이혼, 재산분할 등)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 채무자대리인 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사건
- 형사사건(예 : 절도, 강도 등)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48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1.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2. 내용 ■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5, 사잇돌)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180여 개 대출상품의 한도 및 금리 비교 후 가장 적합한 대출 선택
3. 방법 맞춤대출 앱, 서민금융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 (loan.kinfa.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누리집(loan.kinfa.or.kr)
 ■ 맞춤대출 앱(앱스토어에서 '맞춤대출' 검색)

알려드립니다

맞춤대출서비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①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편리하게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 ②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알맞은 최적의 대출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맞춤대출서비스 이용 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별 0.5~3.0%p 우대금리 적용(상품별 상이)
- ④ 대출상품의 단순 안내가 아닌 금융회사의 실제 대출 심사시스템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한도·금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49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1.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4.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1.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 민사, 가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등 무료 지원
- 3. 방법**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에 문의 후 신청
- 4. 문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관련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 상황별 무료법률 지원 수행기관
 - (가정폭력)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 (성폭력)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펴낸곳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본부
범부처정보관리부

인쇄 2022년 4월

디자인 디자인영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921-10

※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상업용·판매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